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65
----------	-------

발의연월일 : 2024. 1. 11.

발 의 자 : 서삼석 · 오영환 · 이개호
양정숙 · 신정훈 · 송갑석
김승남 · 진성준 · 신현영
윤영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그 요건 및 절차 등 체류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영주자격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계절 근로자제도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한 사업장에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농·어업의 근무환경과 맞지 않고 장기간 근로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숙련근로자 양성이 제한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및 체류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업 등 특정 산업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농·어촌 인력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0조의4 신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및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농·어업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영주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각 산업별로 요구되는 해당 산업의 종사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체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외국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산업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할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주자격의 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산업별로 요구되는 종사기간 등 그 요건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및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10조의4(농·어업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영주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각 산업별로 요구되는 해당 산업의 종사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u> <u>1. 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u>

	<u>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u> <u>종사하는 외국인</u>
	<u>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체</u> <u>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사</u> <u>람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u> <u>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u> <u>당하는 외국인</u>
	<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u>
	<u>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u> <u>영주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u> <u>해당 산업에 일정기간 이상 종</u> <u>사할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u> <u>붙일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영주자격의</u> <u>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산업별</u> <u>로 요구되는 종사기간 등 그</u> <u>요건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u> <u>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u> <u>로 정한다.</u>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영주자격을	① -----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89	-----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우에 한정하여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주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②·③ (생략)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